

## 18. 심리상담센터 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부설 심리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하고 필요에 따라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설립 목적) 본 센터는 가톨릭 이념과 꽃동네 정신에 입각하여 심리상담을 통해 지역 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사랑의 실천을 촉진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심리상담 및 심리평가 제공
2. 심리상담 및 평가에 대한 슈퍼비전
3. 심리상담 관련 지역사회 자문
4.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문가 양성
5. 정부 사업 참여 및 학술연구 수행
6. 지역사회 심리서비스 및 교육 제공

### 제2장 조직

제4조 (센터장 및 부센터장) ① 본 센터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 참여 또는 참사로 보하고 필요에 따라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며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한다.

③ 센터장 및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구성) ① 본 센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및 부센터장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제7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중요한 사항
3.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4장 회계

제10조 (회계년도) 본 센터 회계연도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예산편성)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료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 본 센터의 회계업무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적용한다.